



TECHNICAL INFORMATION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46762
Republic of Korea

Phone :+82-70-8799-8323
Fax :+82-70-8799-8319
E-mail : kimja@krs.co.kr
Person in charge : KIM JaeA

No : 2024-IMO-03
Date : 8th March 2024

MARPOL Annex V 개정에 따른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한 폐기물 기록부 비치 의무화 및 MARPOL Annex V에 따른 검사 사항

이 기술정보는 협약업무팀(convention@krs.co.kr)에서 개정된 MARPOL Annex V 협약 사항(100 GT 이상의 선박들에 대한 폐기물 기록부 비치 의무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 배경

MEPC 79차에서는 Res.MEPC.360(79)를 채택하여 MARPOL Annex V의 10.3규칙(폐기물 기록부 유지) 및 8규칙(수용시설)의 요건에 대한 개정안을 승인하였으며, 이 개정안은 2024년 5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동 개정안은 폐기물 기록부(Garbage Record Book)를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을 (기존 400 GT 이상의 선박에서) 100 GT 이상의 선박으로 개정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소형 어선으로부터 배출되는 해양 플라스틱(어구, 어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폐기물기록부의 비치 요건을 소형 선박으로 확대하여 폐기물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과 관련된 주요사항 및 필요 조치사항을 선주 및 선박 운항 관계자분들에게 제공하고자 기술 정보를 발행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내용

- 100 GT 이상의 선박은 2024년 5월 1일 전까지 폐기물 기록부(Garbage Record Book)를 본선에 반드시 비치하여야 함

2.1 개정요건의 상세 (MARPOL Annex V Reg.10.3)

- 1) 규정 : 폐기물 기록부(Garbage Record Book)를 본선에 비치하여야 함
- 2) 적용 대상¹
 - (1) **100 GT 이상의 모든 선박**
 - (2) 인원이 15인 이상의 모든 선박 (1시간 이내의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
 - (3) 고정식 또는 부유식 해상구조물

¹ 한국적 선박은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함

- 3) 내용 : 폐기물을 해상으로의 배출, 타 선박 및 항만수용시설로의 배출 및 선내소각 시 폐기물 기록부에 즉시 기록되어야 함
- 4) 기타사항 : (MARPOL Annex V Reg.10.3.6) 비상 조치의 일환으로 폐기물의 배출 및 손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관련 사항을 폐기물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100 GT 미만**의 선박은 본선 항해 일지(official log book)에 기록하여야 함

3. 조치사항

3.1 MARPOL Annex V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 (1) **100 GT 이상의 모든 선박은 늦어도 2024년 5월 1일 전까지 폐기물 기록부를 본선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특히, 100 GT 이상의 어선들은 동 요건을 주목하시어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2) 폐기물 기록부는 주관청 또는 선급의 승인 대상이 아니므로 선주 및 운항관계자분들은 자체적으로 폐기물 기록부를 준비하시어 본선에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 (3) 폐기물 기록부는 폐기물 종류에 따라 2개의 Part로 나누어져 있으며, 관련 서식은 우리 선급의 [기술정보 2012-IMO-05](#) 및 하기 그림을 참고 바랍니다 (상세규정은 첨부부의 MARPOL Annex V Reg.10.3 및 Appendix II 참고)

PART I

일시	선박의 위치(위도/경도) 또는 육상 양륙 시 항만명 또는 타 선박에 배출 시 선박명	범주	배출량		소각량(m ³)	비고: (예. 소각 시작 및 종료시간, 위치 및 일반사항)	확인/서명
			해상(m ³)	육상수용시설 또는 타 선박(m ³)			

↑
배출날짜 기록

↑
배출위치 또는 항만명 또는 선박명 기록

↑
배출한 폐기물 종류에 따라 코드 기록
코드 : A(플라스틱류) / B(음식쓰레기) / C(생활쓰레기) / D(식용유) / E(소각재) / F(윤항상 쓰레기) / G(동물사체) / H(어구) / I(전자폐기물)

↑
해상배출 시 배출량 기록

↑
육상배출 시 배출량 기록

↑
소각량 기록

↑
서명

PART II

일시	선박의 위치(위도/경도) 또는 육상 양륙 시 항만	범주	배출량		해상 배출 시작 및 정지 시 선박의 위치	확인/서명
			해상(m ³)	육상수용시설 또는 타 선박(m ³)		

↑
배출날짜 기록

↑
배출위치 또는 항만명 기록

↑
배출한 폐기물 종류에 따라 코드 기록
코드 : J(화물 잔류물(non-HME)) / K(화물 잔류물(HME))

↑
해상배출 시 배출량 기록

↑
육상배출 시 배출량 기록

↑
배출시작 및 정지 시 위치 기록

↑
서명

(4)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 규정은 하기 표를 참고 바랍니다.

(첨부의 Res.MEPC.295(71) 표1 참조)

폐기물 종류 ¹	해상구조물을 제외한 모든 선박 ⁴		고정식 또는 부유식 해상구조물 ⁴
	특별해역 외 (거리는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특별해역 내 (거리는 가장 가까운 육지 또는 빙산으로부터)	
분쇄되거나 연마된 음식물 쓰레기 ²	배출가능 항해 중 3해리 이상	배출가능 항해 중 12해리 이상 ³	배출가능
분쇄되거나 연마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가능 항해 중 12해리 이상	배출금지	배출금지
세정수가 포함되지 않은 화물 잔류물 ^{5, 6}	배출가능 항해 중 12해리 이상	배출금지	배출금지
세정수가 포함된 화물 잔류물 ^{5, 6}		배출가능 항해 중 12해리 이상 (단, 협약 6.1.2규칙에 따름)	배출금지
화물창 세정수에 포함된 세정제 및 세정 첨가제 ⁶	배출가능	배출가능 항해 중 12해리 이상 (단, 협약 6.1.2규칙에 따름)	배출금지
갑판 및 선체외부의 세정수에 포함된 세정제 및 세정 첨가제 ⁶		배출가능	배출금지
동물 사체(해체하거나 즉시 가라앉도록 조치 필요)	배출가능 항해 중 100해리 초과 최대 수심에서 투기	배출금지	배출금지
모든 기타 폐기물(플라스틱류, 합성로프, 어구, 플라스틱제의 쓰레기 봉지, 조각재, 벽돌, 식용유, 부유성 던니지, 라이닝 및 포장물질, 종이, 닳마, 유리, 금속, 병, 도자기 및 기타 유사한 폐물)	배출금지	배출금지	배출금지

- .1 폐기물이 각각 다른 배출요건을 가지거나 배출이 금지된 기타의 물질에 의하여 혼합되거나 오염되었을 때에는 보다 엄격한 쪽의 요건을 적용한다.
- .2 분쇄되거나 연마된 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25 mm 이하의 구멍 뚫린 망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 .3 남극해에 유입된 조류제품의 배출은 소각하거나, 고압 멸균 처리되거나 살균 처리되지 않는다면 배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극지 수역에서는 얼음 농도가 1/10을 초과하는 지역에서 가능한 한 멀리 배출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얼음위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안 된다.
- .4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12해리에 위치한 해상구조물 및 관련 선박은 해저 광물자원의 탐사 및 채굴 또는 이와 관련된 처리에 종사하는 모든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해상구조물, 그리고 이러한 해상구조물에 계류하고 있거나 500m 이내에 있는 모든 선박을 포함한다.
- .5 화물 잔류물은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하역방법을 통하여 회수될 수 없는 화물 잔류물만을 말한다.
- .6 이러한 물질들은 해양환경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3.2 MARPOL Annex V에 따른 검사 및 IGPP DOC 발행 관련

- (1) 협약에서는 선박에 대한 IGPP 적합확인서(DOC)의 보유를 강제화하고 있지 않지만, MARPOL Annex V에서 요구하는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강제요건(폐기물 관련 플래카드 비치, 폐기

물관리계획서 및 폐기물기록부)을 확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IGPP DOC의 발행을 요청하고 있으며, IGPP DOC 발행을 위한 주요 요건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바랍니다.

① **폐기물 관련 플래카드 (Placard)**

- 적용 : 전장 12미터 이상의 모든 선박, 고정식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
- 언어 : 선박 공용어 (working language), 국제항해시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 폐기물의 배출 및 처분 요건과 함께 위반 시 처벌에 대한 사항도 명시되어야 함
- 적어도 12.5cm x 20cm 이상의 크기이며, 폐기물 수집 장소와 선원과 승객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배치되어야 함

② **폐기물관리계획서 (Garbage Management Plan)**

- 적용 : 100 GT 이상의 모든 선박, 승선 인원이 15인 이상인 모든 선박, 고정식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
- 언어 : 선박 공용어 (working language)
- 폐기물 처리 장비의 사용 방법 및 폐기물의 최소화, 수집, 저장, 처분절차를 명시하고 책임 수행자를 임명하여야 함

③ **폐기물기록부 (Garbage Record Book)**

- 적용 : **100 GT 이상**의 모든 선박, 승선 인원이 15인 이상인 모든 선박(1시간 이내의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 고정식 및 부유식 해상구조물
- 언어 :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 (기국의 공식 언어 병기 가능)
- 폐기물의 배출 및 소각 시 즉시 기록하고 책임사관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각 페이지 작성 완료 시 마다 선장이 서명하여야 함
- MARPOL Annex V Appendix II의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최종 기재일로부터 최소 2년²을 본선에 보관하여야 함
- 폐기물 기록부 작성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해양으로의 배출 시	일자, 시간, 선박의 위치, 폐기물의 종류, 배출된 추정량 (화물 잔류물의 경우에는 배출 시작 및 종료 시 선박의 위치)
타 선박 및 항만 수용시설로의 배출 시	일자, 시간, 항만 또는 수용시설 또는 선박의 명칭, 폐기물의 종류, 종류별 배출된 추정량 (영수증과 함께 보관)
소각 시	일자, 시간, 소각 시작 및 종료 시 선박의 위치, 폐기물의 종류, 종류별 소각된 추정량

(2) 따라서 IGPP DOC 발행을 원하시는 경우, 상기 MARPOL Annex V에서 요구하는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요건(폐기물 관련 플래카드, 폐기물관리계획서, 폐기물기록부)을 준비하시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비(분쇄기 또는 연마기³, 압축기 및 저장설비⁴, 소각기⁵ 등)의 관련 매뉴얼을 첨부하시어 우리 선급의 가까운 지부로 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² (해양환경관리법 30조 2항) 한국적 선박 및 해양환경관리법을 적용하는 선박은 최종 기재일로부터 최소 3년을 보관하여야 함. 한국적 선박 관련 문의를 우리 선급 법령업무팀(statutory@krs.co.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³ 형식승인 대상품은 아니지만, 이 장비를 통하여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의 크기가 25mm 이하가 되어야 함

⁴ 형식승인 대상품이 아니며 폐기물 처리의 편의상 제공되는 장비이므로 성능, 외관 및 설치상태 위주로 확인함

⁵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소각기를 설치할 경우 Res.MEPC.76(40) 또는 MEPC.244(66)의 요건에 따라 주관청의 형식 승인을 득한 설비이어야 함

첨부

1. MARPOL Annex V Reg.10 : Placards, garbage management plans and garbage record-keeping
2. MARPOL Annex V Appendix II : Form of Garbage Record Book
3. Res.MEPC.295(71) : 2017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MARPOL Annex V
4. Res.MEPC.360(79) : 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relating thereto MARPOL Annex V

배부처 : 선주, 검사원 등 관련 업계 종사자

(Distributions : Ship owners, KR surveyors, Other relevant parties)

Disclaimer :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